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8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2.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고발 추가의 건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9.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6)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2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2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2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2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2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2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0)
28.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2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3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
31.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4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4.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0)
4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7)
5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5)

5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3)
5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4)
5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2)
5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1)
5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4)
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9)
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2)
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8)
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5)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2)
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2)
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8)
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3)
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6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2)
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0)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6)
6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6)
7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9)
7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4)
7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7)
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2)
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9)
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3)
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7)
7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8)
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2)
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7)
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10949)
8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9)
 8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9)
 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5)
 8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4)
 8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1)
 8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1)
 8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3)
 8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8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0)
 90.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9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2)
 9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9)
 9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2)
 9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5)
 95.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5)
 9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7)
 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2)
 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1)
 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3)
 10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2)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3)
 1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4)

상정된 안건

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1
 - 소위원장(김승원) 인사 12
2.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고발 추가의 건 12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3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3
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0) 13
4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7) 14

50.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5)	14
5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3)	14
5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4)	14
5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2)	14
5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1)	14
5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4)	14
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9)	14
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2)	14
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8)	14
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5)	14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2)	14
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2)	14
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8)	14
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3)	14
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14
6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14
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2)	14
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0)	14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6)	14
6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6)	14
7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9)	14
7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4)	14
7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7)	14
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2)	14
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9)	14
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3)	14
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7)	14
7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8)	14
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2)	14
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7)	14

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9)	15
8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9)	15
8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9)	15
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5)	15
8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4)	15
8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1)	15
8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1)	15
8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3)	15
8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15
8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0)	15
90.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15
9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2)	15
9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9)	15
9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2)	15
9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5)	15
95.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5)	15
9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7)	15
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2)	15
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1)	15
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3)	15
10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2)	15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3)	15
1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4)	15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세요.

○윤상현 위원 이것은 일방적인 사법파괴입니다, 위원장님.

○조배숙 위원 협치를 해 주세요, 협치를!

○위원장 서영교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가 오늘 최소한의 일정들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소중한 민생법안들을 상정해 통과시켜야 하는 차례이나 원내대표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내일 의총을 하고 또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타 상임위 법 의결 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루 한시가 급하다라고 판단하고 꼭 통과시켜야 하나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에게 들어와서 같이 하자는 요청을 하는 관계로 오늘은 타 상임위 법 상정 및 의결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셔서 같이 상임위를 함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오늘 이 내용을 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아니, 그것도 하면 안 되지요.

○박은정 위원 민생법안 처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7항까지 타 상임위 법 4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상현 위원 위원장님, 검찰 보완수사법 하시면 민생법안이 아니라 민생을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민생법안이 아니라 민생을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속도전으로 처리하십니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요청으로 국민의힘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또 의결하지 않고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국힘 위원들 들어오셨으니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 그렇습니까?

○곽규택 위원 일방적인 진행 멈추세요, 당장!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이 민생입법 처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민생 파괴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합의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셨으니까 마저 타 상임위 법도 상정해서 할까요?

○송석준 위원 국회 22년간 유지되어 온 법사위원장 야당 몫 보장해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윤상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완전히 사법파괴 위원장이 되어 버립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장님, 그 자리는 본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오세요.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 민생입법 처리 방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국회 회의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곽규택 위원 물러나십시오.

○송석준 위원 내려오세요. 하반기 법사위는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게 돌려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어요.

○김기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장님 내려오세요.

○곽규택 위원 법사위의 일방적 진행 그만하세요!

○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 들어오셨으면 빨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조배숙 위원 우리 사임계 냈어요.

○김기표 위원 사임계를 내셨어도 의장님께서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법사 위원님이시거든요.

○조배숙 위원 누구 마음대로.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빨리 자리에 앉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가 애초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안 하기로 했던 타위법 심사 통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회의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규택 위원 독단적인 법사위의 진행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지금!

○김기표 위원 잠시만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기표 위원님 그냥 말씀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22대 국회 정상화로 갑시다.

○곽규택 위원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취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송석준 위원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입니다.

○김기표 위원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국회의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국회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흑자들은 무능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거기의 가장 큰 원인은 그때 당시.....

○곽규택 위원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취소 하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당장 중단하세요, 빨리!

○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은 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는 하지만 입법권은 여전히 국회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정책을 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곽규택 위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도 없는 거지, 그게! 공소취소 하려는 게 말이 되냐고!

○송석준 위원 이성을 되찾읍시다. 국회를 정상화합시다.

○김기표 위원 문재인 정부 때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단 한 치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

에서조차도 개혁된 입법을 가로막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대통령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소취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사위가 그런 거 하려고 있는 곳이에요? 보완수사 폐지해 가지고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범죄 저지르게 하고 대통령 공소취소 하고, 그게 법사위가 할 일이냐고요!

○**김기표 위원** 심지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논할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장은 내려오세요. 그 자리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내려오세요.

○**조배숙 위원** 보완수사권 폐지는 악법입니다. 악법은 막아야 됩니다.

○**김기표 위원** 또한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전반기 국회에서는 개혁입법, 필요한 입법들이 전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개혁입법은 무슨 개혁입법이야! 공소취소 하려고 하는 거지!

○**조배숙 위원**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박지원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퇴장시켜요!

○**김기표 위원** 그런 국민의힘이 과연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공소취소 하려고 하는 거지!

○**김기표 위원**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로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배숙 위원** 박지원 위원님, 국회의 전통을 아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 말씀이라도 하셔야지요. 국회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합니까?

○**송석준 위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입니다.

○**김기표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사위의 마지막 관문을 막아서서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민생입법,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 관련 입법 이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대통령 공소취소 못 하게 끝까지 지킬 겁니다!

○**송석준 위원** 법사위를 정상화합시다.

○**김기표 위원**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법사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복도에서 피켓 들고 할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자리에 앉아서 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세요.

○**조배숙 위원** 너무 일방적입니다. 협치를 하세요!

○**곽규택 위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돌려주세요!

○**김기표 위원** 법사위원장직은, 여러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법사위원회는.

그래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지고 트집 잡지 마시고 빨리 국회로, 제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공소취소 절대 못 하게 할 테니까, 법사위원장직 돌려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상현 위원**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파괴당입니다. 위원장님, 사법파괴 위원장이십니다. 공소취소특별위원장이시고요.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장님,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위원장 서영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상현 위원**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 내려오세요, 그만.

○**조배숙 위원** 다수당 됐다고 너무 힘쓰지 마세요.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국회가, 5월 29일 날 전반기가 끝나고 6월 30일 국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국회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국민은 국회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빨리 입법활동으로 뒷받침할 걸 바라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회를 정상화합시다. 위원장부터 정상화합시다.

○**위원장 서영교** 저희들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입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규택 위원** 공소취소 절대 못 합니다!

○**윤상현 위원**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박지원 대표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이 꼴을 보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조배숙 위원** ‘들어올까, 말까’가 아니에요. 협치를 하세요!

○**윤상현 위원** 의회민주주의를 생각해 주십시오, 박지원 대표님!

○**송석준 위원** 국회를 정상화합시다.

○**조배숙 위원** 보완수사권은 통제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으로서 지금 회의장이 소란하여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석준 위원**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입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내려오세요.

○**조배숙 위원** 국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내려오세요.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서영교**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 회의장 소란을 멈춰 줄 것을 촉구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회의장은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소란하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지금 왔다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 증인고발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55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만 선임했습니다. 소위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소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답변이 오지 않아 저희들이 위원장 중심으로 임의로 소위를 구성하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최소한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는 일정을 하고요. 최소한의, 그동안 들어온 법안 중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은 상정이라도 하자라는 의미에서 상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되어 들어온 법이 100건 정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위한 법 그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법, 소상공인들의 생명을 위한 법 그리고 아동과 소년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법들이 우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된 법안을 이 법사위에서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하는 날입니다. 어느 것도 독주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의결을 보류해 달라, 연기해 달라 요청해서 오늘은 연기합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오실 것을 요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그렇든 저희는 다음부터는 타 상임위 법안까지 모두 다 상정해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유법안을 상정, 심사할 것입니다. 오늘 상정하는 고유법안 대부분이 국회법 제59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1년 전입니다—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미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선별한 것이며 그중 급한 법안들을 또한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4시25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간사 및 위원들께 7월 6일 오후 6시까지 법안1소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고 기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께서는 5명의 소위원 명단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8조제1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위 위원 선임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 위원 등 5명,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위원 등 3명, 비교섭단체에서는 박은정 위원, 이상 9명의 위원님을 법안1소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소위원장(김승원) 인사

(14시26분)

○위원장 서영교 법안1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승원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과 각오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위원 우선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역시 일 안 하는 야당,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국회도 모자라서 법사위를 볼모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자체 내에 있는 계파 갈등, 지금 정계로 인한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눈을 돌리기 위한 그런 계략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마 수십 차례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해 왔고 또 국민의힘의 태만과 그리고 거부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국회가 멈춰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장님과 우리 법사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과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그런 것에 같이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꼭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님 수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법안이 밀려 있어서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부지런히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고유법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이 있을 경우, 각 교섭단체 간사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선하는 것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고발 추가의 건

(14시28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고발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영 증인의 위증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것임

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증인이라고 윤석열·김건희 관저 증축 등 관련해서 당시에 나와서 위증을 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청이 와 이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고발 추가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입니다.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4시30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서영교 오늘 의사일정 고유법안 중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그리고 제65항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유법안 상정입니다.

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90)

4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7)
5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5)
5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3)
5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4)
5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2)
5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1)
5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4)
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9)
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2)
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8)
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5)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2)
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2)
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8)
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3)
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6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2)
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0)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6)
6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6)
7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9)
7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4)
7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7)
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2)
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9)
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3)
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7)
7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8)
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2)
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7)

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9)
8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9)
8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9)
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5)
8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4)
8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1)
8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1)
8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3)
8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8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0)
90.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9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2)
9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9)
9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2)
9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5)
95.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5)
9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7)
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2)
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1)
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3)
10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2)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3)
1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4)

(14시31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2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5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정하는 동안 정부기관에서 오셨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중간

진행 과정 속에서 정부기관의 장관님들에 대해서는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4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1명도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날이자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날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국민과 맺은 이 약속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안드리는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사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숙고해 마련한 안입니다. 학계와 법률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 직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며 이 법안의 뼈대입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과도하고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금지하고 피의자 진술의 녹음을 의무화했으며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사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하위규칙과 관행에 맡겨져 있던 인권보호 장치를 이제 법률의 지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셋째,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법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사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시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86일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관이나 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국민이 요구해 온 원칙이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확인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그 시

급성과 무게에 맞게 조속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잘하고 중수청을 통해서 수사를 전문화하고 국수본이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확실하게 처벌해서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만드는 과정, 범죄자 잡는 수사기관이 훨씬 더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수청에서 검찰청에서 하던 수사를 중수청이 전문적으로 해 나가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그 밖의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6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66항까지 1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검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처장의 인사 지연을 예방하려는 취지이나 20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의결정족수를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국적법 일부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해의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나 최장 18년 3개월의 선택 기간이 있는 점, 현재 결정에 따라서 22년 9월에 특례를 신설하는 후속 입법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그리고 제52항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조항을 출입국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의 처우와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으로서 법률상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목적에도 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이 규정돼 있음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한 법안과 함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임금 등을 고액 채불한 행위를 이 법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에 추가하고 임금 등을 채불한 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인 임금 채불에 대해 형사상 가중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임금채불범죄의 죄수와 관련해서 각 피해자의 각 임금지급일별로 죄수를 산정하게 되면 개정안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살인 및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살인·상해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각 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서 이른바 이상동기범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다만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존속살해죄 등 반윤리적 범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되는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에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 또는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방화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이지만 이 법이 2024년 1월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점,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의 범위 확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방송, 전시, 토론회·집회의 공연한 발언 등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도록 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며 친고죄인 사자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범위까지를 토론회 등으로 규정할지 불명확한 점이 있고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구두 발언을 출판물과 동등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사자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사자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게 되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주체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행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법정형을 다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의 법익침해 정도 및 범죄발생·처리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단순한 과실치사의 법정형

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게 되는 점 등을 형벌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개별법에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정비를 함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도박 장소 등을 개설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여 불법 도박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인데 도박범죄의 특성상 법실행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지, 가중처벌에 따른 형사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들의 법정형들을 서로 비교하여 체계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취지이나 전화로 소환장을 대신하는 경우 소환장의 기재사항인 피고인의 성명·주거·죄명·출석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점, 전화소환의 요건인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범문이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 등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통지 하도록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등을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도입된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법적 조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바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재판 참여권 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확대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외에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을 간소화하고 증거조사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제도인데 당사자의 동의로 증거조사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원칙에 부합할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재판서 및 공소장의 일부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서와 공소장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송비용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에 그 취지가 있으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소장, 증거 기

록, 판결서 등 형사사건 기록 전반에 대한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25년 10월 10일부터 수사기관의 전자문서 이용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및 제65항 김용민·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각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제2편제1장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수사권자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개별 수사 관련 조문의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로 이동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삭제 여부가 쟁점사항이 됩니다. 수사과 기소의 분리라는 입법정책 방향에 맞추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사의 보완수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충해야 하므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에 긴밀한 수사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 수사권의 위법·부당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사·피의자·피해자 측에 부여되는 통제수단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제도보완 차원에서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 재정신청제도 도입, 조건부석방 구속제도 신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견제 차원에서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 두는 특정 공무원 직책은 직제 등 행정조직법 관련 법령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소권 남용 견제 차원에서 각 지방법원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소심의회를 설치한 후 피의자·고소인 등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공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배심과 유사한 성격이나 미국은 검사가 신청자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될 필요가 있고 법관의 재판이 아니라 민간으로 구성된 기구의 의결에 따라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66항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수용자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수용자의 서신수수권,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향상시키려는 입법취지입니다.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입니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용자에게는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고 국가는 이를 집행할 의무가 된다는 점, 교정시설 과밀화 상황에서 교정실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빨리 법사위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중한 법들이, 민생을 지켜 낼 법들이 상정되는 과정에도 전문위원들이 그 법을 전부 다 검토해서 검토를 보고하는 이런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냥 국민의힘이 들어올 때 같이한다라고 미루게 된다면 이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빨리 국회 의사일정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은 지금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말씀하에 최대한 부지런히, 열심히 그러나 내용은 알차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7항부터 82항까지 법률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67항부터 82항까지 16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7항과 80항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 조치를 부과받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상담위탁 위반에 대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69항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소송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 법률들은 경찰 행정작용 같은 법적 책임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 가능한 직무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72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등을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벌하려는 내용으로 적국이 아닌 외국 등에 대한 일반이적 행위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 예정인 형법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한 외국 등을 위한 일반이적죄가 신설되므로 이 법의 특별형법적 성격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3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 소속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는 해당 단속사무와 수사의 연계성을 통한 수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특사경이 수사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4항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거래를 통한 손해 발생 범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고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가 상인 측에 편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초한 모든 이 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입법례는 이러한 배상책임을 행위자 측에 위법성에 관한 명백한 인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5항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주제안권의 행사기한을 주총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 행사 관련 주식 보유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도입하며 경영진 측의 대응안건 제안 시 예외적으로 주주제안의 수정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주제안권의 행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경영진과 주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주제안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면서 현행 조항을 정비하고 있지 않아 양 조항의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구별이 필요하고 ‘이사회에서 당해 의안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라는 예외적 주주제안 수정 제출 요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9항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잠정조치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잠정조치 관련 결정을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법정형을 스토킹범죄 법정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잠정조치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아직 ‘그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문언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잠정조치 위반의 법정형은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범죄 간 경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9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93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은 유사 사건 판결문을 법원에 게 추천하는 모델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재판지원 기능을 구축한 경우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이라는 입법취지와 함께 개인정보 및 기밀 유출 가능성, 허위 판결문 생성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은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사건에 대한 사물관할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전형적이며 유사한 범죄인 음주운전죄 재범 사건의 경우도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7항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두려는 것으로 재정신청사건 심리의 전문화·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법원의 자율성 존중 및 사법행정의 탄력적 대응 필요성이라는 현행법상 체계의 취지와 함께 개별 법률 규정을 통하여 전문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등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년을 성인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인 소년과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닌 비행성이 낮은 소년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죄학습 등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사법 통합기관 설치에 따른 추가 필요 인력 및 청사 확보 등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0항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이 도입하며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사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7월 24일 종료되는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수사대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소유지 변호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된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특검법 및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는 특검 또는 특검보와 같이 법조경력 및 인원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특검보와 달리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가 임명하고 있는데 임명권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검보의 공소유지 수행업무 중요성이 특별수사관과 현저히 다른 데 있다는 점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3대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검의 독립적 직무수행 규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인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제반시설’과 ‘도로, 보도, 활주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고 형사처벌 대상의 핵심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정한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 700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물가 수준의 변화, 외국 입법례 및 생명권 박탈이라는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이세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94항부터 10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반씩으로 줄여서 하고 있다는 것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102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서영교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사소송법이 1990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35년 이상 일부개정은 수차례 있었지만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가사소송 법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등 그동안의 사회 환경 및 가사 관련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필요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현행법의 전부개정 필요성은 법제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뉘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현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민사비송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조치를 하거나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개입하는 등 개별적 상황에 따른 특성이 있어 단순히 입법경제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준용의 방식을 취할 경우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다른 절차 규정의 적용이나 준용을 최소화하고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단일한 절차법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법률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규칙에 대폭 위임되어 있어 가사소송법 조문은 제73조까지 있는 데 비하여 가사소송규칙은 제138조까지 있는 등 법률과 하위법령 간의 균형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러한 현행법의 법제는 국민이 현행법만으로 가사소송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가사소송절차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에서 가사소송규칙의 다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실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지금의 가족문화와 사회 현실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미성년

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하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내용도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영업정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고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 심사 시 소송기록 공개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인격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과 소송기록의 공개 범위와 비공개 사유 등이 현행법에 이미 규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강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시점을 계약 체결 전으로 앞당기고 범위를 임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및 공법상 제한사항까지 확대하며 임대인의 의무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해제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여 서민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개정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이라는 시점이 모호하여 계약 성립이 불확실한 단계에서 과세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의무와 중복되거나 임대차 목적과 무관한 공법상 규제까지 일반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에 소급효를 갖는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일반적인 계약법 원칙 및 조문 체계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바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해지권’ 중심으로 자구를 정비하는 한편 계약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 해지권의 발동 요건을 ‘손해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의 유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법안을 상정하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구체적인 검토보고서를 했지만 오늘은 그걸 간략하게 또 그중에서도 반만 검토보고서를 보고하였습니다. 대략 이러한 법안들이 상정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기존에 상정된 법안들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김승원 제1소위 위원장님과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씩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가실 예정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저희보고 의사진행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국회에서 진행되어 나가는 일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저희들 오늘 관련해서는 MBC, JTBC, 채널A, TV조선, KNN 뉴스, JTV, CBS

노컷뉴스, OBS 뉴스, TBC 뉴스, 오마이TV, 엠키타카, 굿뉴스, 엠팩트, 뉴스핌TV, 엠뉴, 장운선의 취재편의점, 문화일보 유튜브 등에서 생중계 중이고요, 오늘 국회방송은 국회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봐 주시고 위원님들도 그리고 또 장관님들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대체토론을……

○박지원 위원 장관님들 소개해야지요.

○위원장 서영교 예, 하는데 토론시간은 간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철 감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법원입니다.

기우중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 오셔야 하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함께하시는 관계로 이두희 국방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은 법률안 또는 현안 등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승원 위원 5분으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5분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승원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안 드시면 순서대로 대체토론해 나가는 것으로 할까요?

○김동아 위원 없으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다 하십시오. 또 다시 만나려면 꽤 한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김승원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에 또 토론을 요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면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부터……

○김승원 위원 저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 맨 마지막으로 하고, 김남희 위원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사건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희 위원 지난 5월 5일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일면식도 없었던 살인자 장

윤기에 의하여 잔혹하게 살해된 17세 여고생입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꿈 많던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최근 많은 보도들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 사건 피의자 장윤기는 사건 당일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는 광주 지역 현직 경찰 간부였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광산서에 작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광산서 수사팀장은 검거 직후 피의자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납치 등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영상을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케이블 타이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밝혀져서 최근 체포되었고요. 범행 직후 광산서장 주재 긴급회의 개최 등 뒷선 개입 의혹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지에는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훼손된 리얼돌이 있었는데 피의자의 아버지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 자취방 주소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서 피의자 검거 이후 리얼돌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수사 과정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다만 이런 일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저희도 일부 토착화된, 소위 말하는 토호 경찰들의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도,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최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수사에 있어서 성폭력 가해자가 지역 내 경찰과 아는 관계임을 과시하거나 지역 경찰에게 정보를 얻는 등 경찰관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경우가 있고 성폭력 가해자가 지역 내에 명망 있는 경우 지역 내 유착 관계가 있어서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역 내 유착·지인 관계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걱정입니다.

장관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차량을 압수수색해서 블랙박스 SD카드 확보하고 여러 지인 진술 확보해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으로 변경해서 기소했습니다.

일반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데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되어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자체 감찰을 엄정히 하면서 또 관련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지금 대한민국 수사절차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대전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꿈 많던 나이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유족들의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한 상황의 범죄피해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유착된 관계나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수사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서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저희 법무부나 검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용·남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겠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통제 또는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제도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수사 권력도, 어떤 권력도 과도하게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일어나는…… 이 내용은 경찰의 부패·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유족이 더 한스러워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해 가면서 경찰들의 비리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철저히 수사요구권 등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해서 수사가 제대로,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말씀드리면서 피해자의 보호는 더욱더 두텁게, 범죄자는 확실하게

처벌하게, 그러나 범죄자로 누명받지 않도록, 그렇지만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확실하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출석해 주신 장관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고 조언하시고 또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감사원장님,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감사원 잘하셔야 돼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박지원 위원 이기홍 전 체육회장, 감사원에서 감사했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박지원 위원 사무총장이 더 잘 아시나요?

○감사원장 김호철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박지원 위원 하셨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개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원장 김호철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일단 마쳤고요. 감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살폈습니다.

○박지원 위원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감사원장 김호철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일단 마쳤습니다.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적절한 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감사원장 김호철 그런데 이기홍 체육회장은 사임한 이후에, 신임 체육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감사 결과는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 결과들은 신임 체육회장이 다 수용을 하고 개선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감사원장 김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님, 장윤기 사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전혀 사실무근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대통령께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살인자 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괜찮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고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박지원 위원 심지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시 잠실 시위대 앞에 나가서, 풋말 보셨어요? 거기에다 뭐라고 써 가지고 나갔냐 하면 ‘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

하고 싸우자' 이런 것 보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래도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국가 최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이상 저희가 어떤 수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우리가 정치권에서 아무리 막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원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 게 원칙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우리가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불렀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파면되니까 '윤석열'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제1야당의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따위 짓을 하면 저는 우리 공권력도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박지원 위원** 이번에 소위 가짜뉴스법 이러한 것에는 저축이 안 되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한데 그것을 형사법에 의율할지는 경찰에서 일단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 법무부에서도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 법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지켜 나가자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민주주의의 1호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예비군 교육장에서 '박지원이는 3대 빨갱이다'. 법원행정처장직무대행이 나오셨지만 호적을 고치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사법부에서 고쳐줘야 돼요. 저희 할아버지가 평범한 농부에 불과한데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의 박낙종으로 알려지고 또 그분은 제가 보니까 경남 사천 분이예요. 그런데 제가 출세해서 호적을.....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3분 더 드리세요.

○**박지원 위원** 호적을 전라남도 진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정판사 박낙종 사장의 손자다, 첫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예요. 일제시대의 행적이 동아일보·조선일보에도 보고되어 있지만 모든 보고서에 나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대구형무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독립지사고 지금 국립현충원 독립지사 묘역에 계시는데, 빨갱이다.

세 번째, 박지원이 빨갱이다. 저는 좀 오해를 받을 거예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했고 북한을 많이 왕래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퍼 나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단속해야 되고. 당해 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인권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가짜 뉴스를 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도 막아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겠지만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강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더라도……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번에 관련 법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법경찰들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방통위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면서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최선만 할 게 아니라 꼭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박균택 위원님은……

○박균택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우선 김용민 위원님 하시고 박은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위원장 서영교 예.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오늘 특검법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농단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수사하는 종합특검이지요.

사실은 박근혜정부가 국정농단으로 무너졌고 부패한 정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이랬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권은 국정농단에 그치지 않고 내란까지 저지른 진짜 종합, 그러니까 나쁜 짓은 최대치로 한 종합판의 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다시는 이런 짓, 이런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범죄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심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와 국회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은 높다고 봅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또 수사할 수 있는 인적 역량도 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 인식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보니까 김태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그동안 정말 요리조리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종합특검에서 드디어 김태효에 대해서 내란 직후에 외국에 내란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파했던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여전히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 2차 특검에서 보니까 대검을 압수수색해서 대검에서도 내란 당시에 움직였던 것들이, 문건 같은 것들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에서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재판절차 진행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돌아가서 빨리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것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그때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초기에 그런 감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하튼 내란 주동자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물론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공수처가 지금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는 높으니까 그것을 늘 명심하시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중 차장님, 왜 법원행정처장 임명, 아

직도 지명 안 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송구합니다만……

○**김용민 위원** 저희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부르겠다—국회법에 따라서 부를 수 있습니다—불러서 따져 묻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불러야 되는 것 아닐까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송구합니다.

○**김용민 위원** 이렇게까지 보고했나요, ‘국회에서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

○**김용민 위원** 또 의견서 하나 내면서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회 무시, 국민 무시, 다 무시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조만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1분만.

○**김용민 위원**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보완수사권 요구의 방식으로 가고 그것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기는 할 건데 지금 현재에도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요구를, 신고하면 검사가 기록을 다 송부받아서 적절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송치까지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그것은 당연히 검찰에 송치되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의 기록이 검찰로 넘어와서 검사가 90일 동안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수사 요구 혹은 보완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저희들도 형소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폐지하게 된다고 하면,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관철한다고 하면 이게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대로 지금 보완수사 요구가 10% 정도가 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보완수사 요구의 통제 수단들을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검사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장관님께서도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들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민 위원**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릴까요?

○**김용민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장윤기 사건 아까 장관님께서 검사들이 언론플레이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례적인 사건은 맞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은정 위원** 그런데 검사들이 언론플레이 하고 조선일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까지 같이 합세해 가지고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으로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서고 있다’. 한동훈은 오늘도 조선일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자 편인가’.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권과 관련해 정부를 방침을 정했고 그렇다면 수사·기소 분리에서 어떻게 이것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과거에 조선일보와 한동훈이 콜라보가 돼 가지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일으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조작수사 하고 조작기소 하고 이런 정치검찰의 폐해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국면으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화뇌동하는 검사들 언론플레이를 장관님께서 감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이게 검사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나 또는 국민의힘과 소위 말해 작당을 해 가지고 언론플레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아시는 것처럼 송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전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언론플레이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럴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박은정 위원** 예.

이 사건은 살인으로 송치가 됐는데 강간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중요한 요인들을 봤더니 경찰에서는 리얼돌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DNA 채취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분석관이 이게 성적 목적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강간살인으로 송치할 수도 있었고 그냥 살인으로 송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그냥 살인으로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보니까 이 사건이 송

치 이후에 5월 22일 날 광산경찰서에서 추가적인 범행, 범행 당일 날, 이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이 당일 날 다른 강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과 이게 연이어 가지고 이렇게 갔다면 이것은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추가적인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보니까 종합해서 이것은 강간살인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광산서 여청계에서 아마 그 강간 사건은 수사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은 강력에서 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했다면 경찰에서도 강간살인으로 송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은 경찰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수사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강간살인으로 왜 송치를 안 했냐 이 부분은 보완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에서는 죄명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리얼돌 관련해서 검사들이 아버지가 리얼돌을 폐기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초기에 나왔는데 리얼돌 관련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사진을 촬영했고 DNA도 채취했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검사가 영장을 할 때. 그러면 리얼돌을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검사가 영장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던 것, 검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이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경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검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됐던 범죄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검사들은, 오늘도 나왔는데 특검에서 검사들의 내란 가담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1분 더 주세요.

○**박은정 위원** 선진국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경찰이 유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다른 모든 선진국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행안부와 법무부가 그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는 억울한 죽음에서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 검경이 모두 다 합심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야 되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 검찰개혁 법안 과정에서 촘촘히 두텁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수사개시 할 수 있는 권한,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졌고 없는데, 다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또 국가수사본부나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윤기 관련 사건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윤기 승용차 내부 블랙박스 SD카드 문제, 아버지 집 압수수색해 가지고 찾아낸 것들, 장윤기 1년 치 통신 조회한 것들 그다음에 카드 내역 해 가지고 사용한 것들 그다음에 화물트럭 블랙박스 확인해 가지고 뒤에 문 열어 놔던 것, 이런 것들이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검찰이나 또는 광주지검에서 한 게 아니고 올라온 사건들이 의심됐기 때문에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 수사하실 때 약간 프로파일링을 해 보니까 그런 의심도 든다고 했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검찰에서 이 사건 하나 강조해 가지고서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플레이한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피해자가 있을 때 총동원해서 범죄자를 잡는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면서 경찰 안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확실하게 처벌되고 수사관들이 아버지 경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교체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찰도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도 마찬가지면서 이 과정에서 또한 언론도 큰 역할을 함께해 줘서 범인을 잡게 되었으나 이 범인이 더 큰 범죄가 어디 더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총동원되어서……

하늘에 간 여학생은 말이 없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유족은 아주 영원히 가슴에 한이 맺힐 겁니다. 그 한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낼 수 있게 저희 법사위와 행안위 등 모든 직역이 다 그 역할들을 함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김동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기우종 대행님, 오창훈 부장판사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최근에 보니까 사직 처리했더라고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봄에 사직 처리됐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수사 중인데 어떻게 사직 처리가 가능하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

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르면 사직 처리가 가능한 기준 범위 내에 있어서 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수사받고 있는 내용이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안 중에서도 저희가 윤리감사관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사직 처리가 가능한 기준에 포함돼서 사직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 내부 기준이 있나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내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처장님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대행이신데.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히 여기서 낱말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예둘러 말씀드렸는데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 징계위원회에 대행님도 들어가셨어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저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김동아 위원**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징계했을 때 그 논의 내용이 지금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것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게 오픈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확인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결과를, 징계위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징계 결과는 일정 직급 이상들은 관보에 게재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공무원이 대낮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경찰이 출동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징계 양정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그 행위에 걸맞은 징계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김동아 위원** 판사들은 보통 낮에 술 먹고 노래방 가고 하는 게 일상인데 걸려서 그냥 경고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 진행 중인 것은 합의부 사건을 단독으로 판단했고 합의 절차가 없었다는 건데 그것은 거의 직권남용 더하기 문서 위조까지, 허위공 문서 작성까지 가능한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온당한지의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직 처리가 가능한 징계 수위 범위 내였다고 저는 그렇게……

○김동아 위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법원의 그런 징계 기준이 일반 상식과 법 감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돌아보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돌아볼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을 제시해 주시고요. 저희가 잘못된 것 있으면 같이 또 얘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그 부분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공수처장님, 오창훈 부장판사가 지금 고발된 게 1년이 넘은 건 줄 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동아 위원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나름대로 수사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안은 올라가 있지만 법관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적절한 행위 부분은, 행패 부렸다든지 낮에 어떤 비행 이런 부분은 또 수사 대상이 아니고 나름 판결의 작성 과정에 어떤 그런 비위가 있는지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게 지금…… 고발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판사들 몇 명만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문제를 혐의가 없으면 그냥 불기소를 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걸 1년 넘게 이렇게 무능하게 들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국민적 관심사가 한동안 높았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좀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서 그냥 사건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범죄 이렇게 딱 제한이 있어 가지고 법관의 모든 비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제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제한이 되면 다른 데에 이첩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걸 무슨 들고 계신…… 그게 맞는 답변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검찰이나 경찰에, 국수본에 이첩하면 되는 문제를 그것을 무슨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공수처 범죄 대상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대행님, 그러면 오창훈 부장판사 지금 연금이나 이런 거 다 지급되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연금 여부까지는.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인터넷 잠깐 검색했더니 최근에 변호사 개업까지 했습니다, 전관을 강조하면서. 이게 과연 맞습니까?

법원에서는 통상적인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그런 비위가 발생했을 때 엄격하게 처리하는데 왜 법원만 유독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숨방망이 징계를, 징계도 아닌 경고 처분하고 연금도 다 꼬박꼬박 받게 만들고 지금 개업까지 해 가지고 전관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용납이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수리를 하는 즈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징계 수위라든가 그런 기준도 됐고 과연 계속 재판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게 맞는지 그 또한 저희가 함께 고려를 했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추가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런데 김동아 위원님이 다시 얘기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내용이에요. 잊어버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는지……

법원은 자기 가족은 하나도 조치를 안 취해요.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위증한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지귀연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때 계산서까지 다 나왔고 여자가 나오는 술집이라는 얘기까지 다 나왔고. 그러고도 아무 조치도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셔야 또 이곳에서 국민들께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라고 보여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계시는 판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가 그런 걸 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제기합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정성호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에 오용이라든가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사법체계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하는 그런 기관들, 사람들은 항상 오남용의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법왜곡죄를 신설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법왜곡죄 조항에 보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이 건도 법왜곡죄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게 입건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법왜곡죄로 입건을 해서 조사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요. 어쨌든 법왜곡죄로 입건한다고 해도 이거는 경찰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입건하는 건 검찰의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어쨌건 이 건은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두 번이

나 유족에게 큰 상처와 회한을 준 건데요. 그래서 법왜곡죄를 저희가 신설한 거고.

지금 고민은 법왜곡죄 공소시효에 있어서 담당 수사관이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생각이 나게 만드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사위에서 혹은 법안1소위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데 중수청을 만든 것은 거기에 검찰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와서 서로 긴장 상태에서 견제도 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검사 혹은 검찰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해서 경찰 쪽 공무원들과 함께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일선 검찰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법무부에 나와 있는 검사들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은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수사해야 되는 대상인 범죄들이 중대하고 어려운 범죄들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체에 영향이 큰 범죄들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이고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61항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 등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중간중간 통지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는지 또 공소제기 후에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등을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통지한다, 이게 사실은 정보의 투명성, 공개성을 담보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률 개정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게 실효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 그다음에 증거라든가 자료들이 전부 다 KICS라든가 어디에 다 전산화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전산화되는 것에 혹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추계를 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사실 수사 전 과정 그리고 수사에 나타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 보관되고 그다음에 사후라도, 수사 마친 후라도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사후 검증을 통해서 누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오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남용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 작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동의합니다.

○김승원 위원 그래서 바로바로 스크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수사 과정이 다 스크린이 되어서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든 혹은 징계 책임이든 받는다고 하는 시그널을 주어야 수사기관이 긴장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좀 더 생

각하고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을 했고 지금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또 한쪽으로 의견을 들으면 배임의 구성요건의 추상성, 모호성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신규 투자라든가 대전환이 필요할 때 기업 하는 분들 또 이사들이 지금 주저주저, 머뭇머뭇 항상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면 자문하는 사람들이 항상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우려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2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예, 2분 더 드리십시오.

○**김승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걸린다고 합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좀 명확하게 하거나 혹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폐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 법무부에서도 거의 지난해 이때쯤부터 시작을 해 갖고 배임죄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은 일단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개의 독립된 특별법을 만드는 안도 있고 아니면 배임죄의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는 안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정부 내에서 협의를 거쳐 갖고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요. 어쨌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배임죄가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지금 보이는데요. 사실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어느 한 측에 손해가 되고 또 어느 한 측에는 이익이 되는 경우를 단순히 경제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개정안으로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법원 기우종 차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법관 한 분이 결원이지요? 꺾이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언제 제청하실 겁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한번……

○**김승원 위원**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늘 국회에서도 또 사건 관계자들도 난리인데 일을 너무 태만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어쨌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신데 제청권자가 너무 본인의 의사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하지만 1분만……

○위원장 서영교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언제까지 제청하겠다는 답변을 못 합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국회에서, 계속 협의를……

○김승원 위원 벌써 몇 개월째지요? 4개월인가요, 5개월인가요, 공석된 지가?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4개월째 됐는데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다른 건데요, 집단소송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집단소송제가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단소송제를 통해서 예컨대 손해배상의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범위가 넓어진 경우에 지자체의 재정 파산까지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됩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집단소송제에 관해서 소위에서 행정처가 드린 의견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사실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소급효 부분에 관해서 좀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법안이 나오면 정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사기업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대량 유출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정적인 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있어서 이 지점도 법원도 함께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잘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것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 제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지원 위원님요?

○박지원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특별히 해 드릴 텐데 이성운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제가 선배니까 먼저 할게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운 위원님까지 토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사이에 더 하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법무부장관님하고 행안부장관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성호 장관께서는 좀 뜨악하시겠지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이 문제를 놓어쥔, 공장지대에서는 뜨겁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해남 문내농협 김철규 조합장은 농협에서 계절노동자 환영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포는 출장소입니다. 수차 강조를 했지만 거기에는 영암 대불공단이 있는 산업단지도 있지만 도서 지방에 놓어쥔이예요. 해남은 지금 현재 면적이 서울시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신안군은 그 해역을 합치면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정성호 장관께서…… 인천 옹진, 섬들 아니예요? 거기의 해외 노동자들, 계절노동자들이 일일이 인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나와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장관께서 출장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옹진에 있는 계절노동자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옹진 주민들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의 소리가 저 남쪽 해남·완도·진도까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해외 노동자, 계절노동자의 숫자를 가지고 사무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다에서, 섬에서 목포까지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소로 승격해 달라,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행안부가 늘 제동을 걸고 있어요. 윤호중 장관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저희한테 연락해 온 것이 절충안을 내왔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절노동자나 해외 노동자…… 지금 실제로 보면 해남·완도·진도의 10~15%가 해외 노동자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으면 모든 생산, 어로·농업 활동이 중단되고 또 그분들이 없으면 소비경제가 마비돼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필요한데 출입국관리본부장, 처리가 잘되겠어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앞으로도 더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저희가 출장소에서 사무소로 승격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대신에 5명 증원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인력 증원뿐만이 아니고 사무소 승격까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글썄, 행안부에서도 5명을 더 증원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비자 직원이 1명이 했는데 2명으로 하고 좀 개선은 됐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해남군이 서울보다 더 크다니까요. 신안군은 대한민국 땅보다 더 커요. 거기에 군데군데 섬이 있단 말이에요. 완도, 똑같아요. 그런데 해외 근로 노동자들이나 계절노동자들이 와서 관리가 되겠냐고요. 다시 한번 제가 기록을 위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행안부하고 저도 접촉을 할 테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장관님, 해외 노동자들 단속하는 것 사전 통보하고 단속하신다고 그랬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지, 출입국관리소 단속차가 썩 하고 나오면 모든 들녘, 바다에서 일하던 해외 노동자들이 다 도망쳐 버려요. 그래 가지고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일은 안 되고 인건비는 다 주고, 그래서 물론 불법 노동자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속해야지만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꼭 통보해 주고요. 이게 지금 녹음이 됐어야 돼. 꼭……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정말 그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박지원 위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소리)

왜 웃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총리 가지 말고, 진짜 해외 노동자나 계절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정 장관의 업적은 크다니깐요. 웅진 그렇게 출장해서 처리하니까 그러한 칭찬이 저 남쪽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지역에 대한 특수한 상황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저에게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지역에서 직접 듣기도 했지만 계절노동자가 지금 열심히 일할 시기인데 법무부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노동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노동자도 있고, 그런데 단속을 하면 어떤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무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 지방에서는 단속을 나오면서 지금이 그나마 불법인 노동자가 많이 보일 때라는 거예요.

많이 일하러 나오니까 불법인 노동자가 많이 보이고, 그러면 단속하고, 그러면 일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불법이라고 해 놓고 단속은 하지 말라고 하고, 현실은 단속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손은 필요한데 불법 딱지는 붙여 놓고 연제는 봐주고 언제는 또 불법 하고 이러면 노동력이 필요한 국민은 괜찮겠으나 당사자들

도 마찬가지로 당국도 해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을 정확히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만드셔서 그런 일 없게…… 그러나 지방 농촌 현장 등에는 노동자가 아주 많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과거 정부하고 다르게 매우 유연하고 또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업무의 특수성이 기본적으로는 또 원칙적으로는 국가 법질서 유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라든가 또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일선 제조업체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갖고 그야말로 과거와 같은 그런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거의 10분의 1로 줄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 서영교** 기준도 명확히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저희들도 불법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서 관리하는 게 낫다라는 원칙하에 저희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도권 안에 확실히 넣어 주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약자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매개로 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저희가 또 많은 하소연을 듣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받으니 다행입니다.

○**박지원 위원** 정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장관 오래 하라니까,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말고.

○**위원장 서영교** 법무부장관 잘하시도록 하십시오.

○**김동아 위원** 오래 하신다고 발표 났던데, 개각에 안 들어간다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원행정처 권한대행님, 처장권한대행님께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월 21일 날 4명을 추천했고 거기에 대해 제청만 하면 되는데 지금 무려 다섯 달째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전에도 제가 대행께 말씀드렸지만 이건 직무유기다, 처벌될 수 있다, 과거에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최상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가지고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경고하면서 권한대행님께 꼭 조희대 원장님께 그 이유를 여쭙봐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물어보는데 말씀 안 하시네요. 언제쯤 말씀해 주시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제

속 협의는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디까지 드려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게 문제가 또 올해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벌써 착수했을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지금 임명동의자들에 관해서 천거를 이미 받아서 추천위원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처럼 천거한 후임도 만일에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그렇게 계속 숙된 말로 개길 겁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리고 처장님은 권한대행이 지금 하지만 여기 오실 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처장님은 법원을 대표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그렇게……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권한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저도 그 부분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꼭 그렇게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오실 때는 그 이유를 말씀 주셔야 돼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냥 통상적인 수형인처럼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독방이니 방을 3개 쓰니 이런 말도 있었는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혀 사실 아닙니다.

○이성윤 위원 그건 사실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윤석열 영치금 현황은 개인정보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외부적으로 공개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판단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영치금 현황, 윤석열이 작년 7~10월 109일간 6억 5700만 원이 영치금으로 들어왔고 교도소에 관련된 분들이 백팔십 차례 출금했고 그 후에 2026년 4월까지 보니까 또 6억 원이 더 들어와 가지고 총 12억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인출 횟수가 358회, 이것 인출하려면 교정공무원이 인출해 주는 거지요, 대신?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아니, 지금 내란 수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월급이 2억 얼마인데 4배, 5배의 영치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치후원금 받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또 재판도 이렇게 후원금 받아 갖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장관님께서서는 확실하게 방 하나 쓴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또 특별대우 받는 것 아

닌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치금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공무원들이 인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윤석열 후원금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하게 공개해 가지고, 지금 7월 달까지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 인출해 줬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관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제 국회도 폐지하겠다, 정부도 폐지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발표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원칙인데 저희가 법무부나 행안부에 물어보면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형사소송법이 확정 안 됐으니까 10월 2일 날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의 출범 준비가 지금 미진하다,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중수청·공소청의 출범 관련해서는 저희 형소법과는 관계없이 지금 준비단들이 구성돼 갖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2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저한테 말기셨습니까?

○**이성윤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2분 더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제가 준비단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보고를 받거나 또는 얘기를 들어 보면 형소법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전제로 인력과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실무적인 시행령을 만든다든가 조직, 인력을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이것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공소청 설립 작업이 상당 부분 형사소송법에 의존돼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에 만일에 공소청·중수청만 출범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아니, 저희들이 검찰개혁의 요체는 중수청·공소청을 분리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맞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만일에 10월 2일 날 그게 출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큰 혼란이 오겠지요.

○**이성윤 위원** 그러면 중수청·공소청만 출범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상적인 수사절차가 운영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이게 형사사법의 큰 혼란은 물론이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런 걱정을 하

는 분이 계세요. 공소청이 됐지만 여전히 기존의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할 것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위원님,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검찰이 일부 합동수사본부 외에는 그 외의 다른 인지수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성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국민들의 우려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공소청에 대해서도 계속 직접수사권하고 그다음에 기소권을 가지고 또 정치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법무부장관 정성호** 직접수사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성운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미뤄서 결국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검찰개혁 추진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앞으로 향후 1년 반 정도 남았지만 그렇게 검찰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개혁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사무처장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헌재에서 지금 재판소원 진행하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학생 학폭 사건 관련해서 권경애 변호사 사건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피해 유족이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슬픈 사연이었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이것 기각하셨습니까? 각하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권경애…… 피해 유족이 낸 재판소원, 우리가 재판소원법을 만들어서 아프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헌법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라고 했는데 왜 어떤 이유로 재판소원을 각하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제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서 각하 사유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 세상을 떠났지요. 그 유족이 소송대리인으로 권경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 사람이 재판 불출석, 시간 놓치고 이래서 아예 패소가 됐어요. 이 아이의 유족은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긴 겁니다, 기본권을.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유일해서

헌법재판소를 찾았는데……

재판소원 사건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지금까지 1315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12건이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도 찾고자 소원을 내는데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잘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시 한번 보시고 각하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렇지 않고도 받아들일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1300여 건은 어떤 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어떤 건이 재판소원으로 들어왔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 주시고 각 위원들에게 다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제발 더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소원법 만든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위원장 서영교 벌써 이제 귀찮아지신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아닙니다,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많은 사람들이 넣는다고 귀찮아지신 건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위원장 서영교 다음에 국방부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안 계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장 서영교 광주, 이번에 대통령께서 내신 3대 메가프로젝트, ‘대체불가 대한민국’ 저희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1조가 온다 그래도, 저희 지역의 면목선 도시철도 1조 800억 짜리인데 20년 걸려서 제가 예타를 통과시켰는데요 그것도 서울에서 네 군데 중에 저희만 통과됐을 정도예요.

그런데 1조가 20년, 그것도 안 되는 게 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삼성과 SK 등과 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퍼지컬 AI 등을 호남·충청·영남·평택·용인 등에 골고루 하니까 4755조더라고요. 이번에 광주 군공항이 여기에 함께 그 장소로 제공되게 됩니까? 이야기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난 월요일 날 정부에서 서남권 메가프로젝트 관련한 발표에서 광주 군공항을 해당 부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제 군공항은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광주 군공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절차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2033년경 정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서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광주 군공항을 해당 부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 절차대로는 정상적인 정부의 속도

전에 맞춰서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방부에서는 군의 대비태세 측면 그리고 기존의 광주 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 지역으로 이전시키려고 했던 군공항 이전 계획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서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국방력에 차질 없도록, 더 강한 국방력 또 첨단에 대한 국방력, 첨단화된 비행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수시로 보고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채 해병 관련해서 지금 처벌받은 군사 관계자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해병대 관련자들은 일단 형사적으로 구속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따라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다만 군법무관 관련되는 사안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징계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합당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군법무관 징계가 0명이다, 채 해병 이제 3주기가 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저희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질의하고 문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 처벌이 0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빠르게 잘못된 것은 징계해 나가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렇게 오늘 여러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 하반기 법사위가 진행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처벌받고 윤석열은 감옥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금방 국방부차관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드론을 띄워서 대한민국의 전쟁까지 주도하려고 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랑 여기서 질의를 주고받던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징역 25년, 우리랑 질의를 주고받았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무기징역 아닙니까.

저희들 그때 생생합니다. 평양에 드론이 떴다고 해서 저희가 김용현 장관에게 빨리 나가서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가 중지까지 해 주면서, 국정감사 기간이었나요? 그러면서 내보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나가서 우연히 만났더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신들끼리 모여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들은 벌써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고, 2023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심우정 대검 검찰총장의, 그 안에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검사 PC에서? 그 문건은 비상계엄 치하의 재판 관할과 수사는 바로 어디로 넘어가는가 이런 것과 관련한 문건이었는데 그 문건에 관한 내용은 법원이 12월 3일 날 논의했던 내용하고 똑같대요, 비상계엄이 생기면 재판 관할이 군재판으로 넘어간다. 그렇지요, 기우종 처장님?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여기 나와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날 무슨 이야기했습니까?’라고 했더니 ‘비상계엄이 성공하면 재판 관할이 군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

해서 논의했습니다'라고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것과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 산하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종합특검이 더 잘 수사해 줄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국회 법사위가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업무보고도 진행해 나갈 것이고 금요일부터 소위를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들께서 하반기 각오 간단히 한말씀씩 하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동운 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법사위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조직이 새로 꾸려졌는데 이 기회로 우리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자문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기우중 차장님.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중** 위원장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실한 법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원장님 하셔야 될 일이 이번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도.

김호철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김호철** 제가 12월에 감사원장 취임 이후에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 또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국정조사에서 확인해 주시고 또 의혹을 제기해 주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 후속 조치를 위한 TF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부여된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고맙습니다.

정리한 내용들은 저희 법사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계속하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감사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법질서와 또 헌법을 최대한 존중해야 될 저희 법무부가, 제 전임자가 법정구속 되는 그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깊이 저희 법무부는 반성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 상태가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사명을 다시 저희들이 다지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헌법재판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두희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 국방부는 완전한 내란 척결 그리고 산적한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사관학교 교육개혁 문제, 방첩사를 비롯한 군정보기관의 개혁 문제, 저작권 회복 문제 그리고 처우 개선 등 떨어진 일선 하급 간부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되는 문제, AI 드론 등 시대에 맞는 첨단국방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 등 산적한 개혁 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산적 뒷받침도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원 양 유족 관련한 말씀 중에 가해자의 아버지,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가 또한 법적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법적으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102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제1(9인)	◎김승원 김남희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5)
	곽규택 나경원 조배숙	국민의힘(3)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박은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5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승원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윤상현 이성윤 조배숙

○출장 위원(1인)

손 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김호철
법무부
장관 정성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국방부
차관 이두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권한대행 기우중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2)

이상 5건 7월 2일 회부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0)

7월 3일 회부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9)

이상 4건 7월 6일 회부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2)

이상 2건 7월 7일 회부됨

○청원 회부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2026. 6. 20. 장중환 외 75,8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06)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2026. 6. 27. 김민주 외 50,26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0)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탄핵소추 촉구 국민청원에 관한 청원

(2026. 6. 28. 임태훈 외 52,5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1)

이상 3건 7월 3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645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무부	2026. 6. 30.
부령	제1118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보고서 제출

2026년도 2분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

(2026. 7. 2. 법제처장 제출)